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4. 4.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3. 22. 채우진 의원 외 7명
- 나. 회부일자: 2023. 3. 24.
- 다. 상정일자: 제261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2023.3.30.)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이한동 의원】

가. 제안이유

최근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관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의 관리대상이 아닌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이에 안전관리 대상이 되는 옥외행사의 범위를 우선 확대하고, 구민의 책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고자 제안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1) 안전관리 대상 옥외행사 적용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2)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의2)
 - 구민이 소유하는 시설, 건물 안전관리에 대한 협조
- 3) 안전관리계획 대상 옥외행사의 주요내용 구체적 명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입법예고(2023. 3. 22. ~ 3. 27.) 결과: 의견 없음
-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3. 검토보고(전문위원 유준상)

- 본 조례안은 채우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행정 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으로 최근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관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과 동법 시행령의 관리대상이 아닌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이에 안전관리 대상이 되는 옥외행사의 범위를 우선 확대하고, 구민의 책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고자 제안하는 것임.

가. 제정 취지(적정성/타당성)

- 최근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관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과 동법 시행령의 관리대상이 아닌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함에 따라 안전관리 대상이 되는 옥외행사의 범위를 우선 확대하고, 구민의 책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고자 제안한 내용임.

나. 타 자치구 조례 제정 현황

- 서울특별시 17개구 자치구 제정 시행
 - 구민의 책무를 명시한 자치구(강동구, 강북구, 관악구, 구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서대문구, 성북구, 중랑구)-11개

다. 주요 제정내용

- 안 제3조(적용범위) : 「공연법」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 본법」의 조 치대상인 아닌 행사(순간 최대 관람객이 1,000명 미만인 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 하도록 규정하여 최근 사회적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과 선제 적인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기존 “순간 최대 관람객이 3,000명 이상인 행사”에서 “순간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인 행사”로 안전관리 대상 옥외행사의 범위를 확대함. 이에 따라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이상 3,000명 미만으로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500명이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함.
- 안 제4조의2 구민의 책무를 신설한 내용임
 - 각종 사고로부터 구민의 재산과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포구민의 협조가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강제조항이 아닌 구민의 협조 를 요청하고자 하는 내용임.
- 안 제5조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내용임.
 - 제2항제1호 안전관리 계획 수립시에 필요한 개요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 여 추후 관련 부서에서 안전관리 계획 수립에 철저함을 기하도록 본 조항 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임.

라. 종합 검토의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 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 조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최근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중요 성이 확대됨에 따라, 「공연법」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 본법」의 조치대 상인 아닌 행사에 대하여 안전 관리 규정이 미비한 부분을 정비하고,
- 다중 밀집지역에 많은 사람이 모인 것에 대한 좀 더 세밀하게 행사를 관리 하는 목적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구민의 책무 를 규정하고자 함은 법령의 위임 없이 구민에게 의무적인 사항은 규정할 수 없기에 “협조” 규정으로 명시하여 권고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상위법령과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법령과 조례에 참여행사 인원수를 명시한 것과 관계없이 작은 무관심으로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사고에 대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나 관리 관청도 큰 고통과 아쉬움이 있을 거라 판단되어 안전이라는 단어가 지나칠 정도로 미리 대비하는 안전 매뉴얼 정비와 대비훈련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된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

[별표 1] 관계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23. 1. 5.] [법률 제18685호, 2022. 1. 4., 타법개정]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3. 1. 5.] [대통령령 제33198호, 2023. 1. 3., 타법개정]

제73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를 말한다.

1.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2. 축제장소나 축제에 사용하는 재료 등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

가.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나.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

②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하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축제의 개요

2. 축제 장소·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5.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③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개최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④ 법 제66조의11제3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축제 개최일 3주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는 해당 축제 개최일 7일 전까지 변경된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세부적인 내용 및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